

소규모 합병 공고

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 는 2018년 10월 22일 지허브 주식회사(이하 “지허브”)와 합병계약(이하 “본건 합병”)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 당사회사

가. 존속법인: 당사(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(삼평동))

나. 소멸법인: 지허브(본점 소재지: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630(용잠동))

2. 합병방법: 당사가 지허브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지허브는 해산함

3. 합병비율: 「당사 : 지허브 = 1 : 0」 (당사는 지허브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,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1:0으로 하고,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)

4. 합병기일: 2018년 12월 21일

5. 당사와 지허브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: 2018년 11월 5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[별첨]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.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
나. 제출기간: 2018년 11월 5일부터 2018년 11월 19일까지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(1) 명부주주: 2018년 11월 19일(월)까지 당사 본점 소재 IR부서(재무기획그룹)에 제출(※ 전화 : 02-6200-8416)

(2) 실질주주: 2018년 11월 14일(수)(※명부주주보다 5일 전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(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) 하거나 2018년 11월 19일(월)까지 당사 본점 소재 IR부서(재무기획그룹)

에 제출 (※ 전화 : 02-6200-8416)
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

[별첨]

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와 지허브 주식회사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 수	

2018년 ___월 ___일

성명: (인)

주소:
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:

전화번호:

2018년 11월 5일

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재 훈